파주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 안 번 호	관련 351

제안년월일 : 1998년 4월 2일
제 안 자 :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 민태승

1. 수정이유

시설관리공단의 임원 및 직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기하고 조례상 필요성이 없는 일부 조문의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수정주요골자

○ 감사의 임용원칙을 상임에서 비상임으로 변경함. (안제9조제2항)
○ 겸직을 제한하는 임원을 상임임원으로 한정함. (안제11조)
○ 공단의 여유자금의 운용에 관한 내용을 삭제함. (안제19조)
○ 최초의 사업년도에 대한 경과조치규정을 삭제함. (부칙 제3조)

파주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에대한수정안

파주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제9조 제2항중 "상임"을 "비상임"으로 하고 "비상임"을 "상임"으로 한다.

안제11조중 "임원"을 "상임임원"으로 한다.

안제19조를 삭제하고 안제20조 내지 제25조를 각각 제19조 내지 제24조로 한다.

부칙 제3조를 삭제한다.

수 정 안 대 비 표

원 안	수 정 안	비 고
제9조(감사) ① (생 략) ② 감사는 상임으로 하되 사업의 경영상태와 여건을 감안하여 비상임으로 할수 있다. ③ 생 략	제9조(감사) ① (원안과 같음) ② ····· 비상임 ····· ····· 상임 ····· ③ 원안과 같음	
제11조(임직원의 겸직제한)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수 없다.	제11조(임직원의 겸직제한)····· 상임임원 ····· ····· ·····상임임원····· ····· ·····	
제19조(여유자금의 운용) 공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상 여유자금을 운영하지 못한다. 1. 국채, 지방채의 취득 2. 금융기관에의 예입	<삭 제>	
제20조 (생략) 제21조 (생략) 제22조 (생략) 제23조 (생략) 제24조 (생략) 제25조 (생략)	제19조 (원안 제20조와 같음) 제20조 (원안 제21조와 같음) 제21조 (원안 제22조와 같음) 제22조 (원안 제23조와 같음) 제23조 (원안 제24조와 같음) 제24조 (원안 제25조와 같음)	
부 칙	부 칙	
제3조(최초의 사업년도에 대한 경과조치) 공단의 최초사업년도는 공단 설립일로부터 당해연도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삭 제>	